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16
----------	------

2013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6월 17일, 김정재의원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정재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현재 서울시 출연금 800억원, 우리 은행 기부금 400억원 등 총 1,275억원이 조성되어 있음(재단 청사 118억원 별도). 이러한 기본재산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소중히 보존되어야 하나, 2013년도에는 서울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과소교부로 인하여 기본재산에서 84억 6천만원을 사업비로 혈어서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됨.

- 최근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기본재산의 일부로 비수익자산인 사옥을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가 비회기 중 개최된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당시 매수계획을 철회하고 서울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서울문화재단이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본재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단의 기본재산에 시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재산도 규정함(제4조제1항제1호).
- 재단이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기본재산에 시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재산도 규정(제4조제1항제1호)하고 재단이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4조제3항)하기 위한 것임.
- 현행 조례 제4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만 규정되어 있을 뿐 재단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재단에서도 기본재산의 총액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출연금과 기부금 등 현금만을 합산하였으며 청사 건물은 참고자료로 부기만 하였음. 따라서 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서울시가 출연한 출연금뿐만 아니라 현재 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건물도 포함하여 규정함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재단청사 118억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서울시 출연금 800억원, 우리은행 기부금 400억원을 비롯하여 총 1,275억 2,200만원이 조성되어 은행 및 증권회사에 예치되어 있으나, 금년도 예산배정 시 서울시 출연금의 과소교부로 인하여 기본재산에서 84억 6천만원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에 따라 향후 재단의 기본재산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음.
- 그러나 최근 서울문화재단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매수의향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비회기 중 긴급하게 소집된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추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당시 매수계획을 취소하고 서울시

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음.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에서 재단이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재단이 기본재산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임.
-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사용사무에 대하여 시장 승인 전 “소관 상임위에 동의가 아니라 보고를 하여 상임위에서 조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조문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우리 의회 자문변호사에서 3명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그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의견 1(법무법인 민) : 재단의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의 고유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유사무라고 보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단체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등에 관하여서는 강력한 사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시장의 고유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옴.
 - 의견 2(법무법인 이래) : 서울문화재단의 운영 주체와 감독 주체가 모두 서울시장이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

지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서울문화재단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위한 조례이므로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님.

- 의견 3(고려대 이희정교수): 지방자치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가 행사한 것이므로 적법한 내용의 적절한 견제 수단임.
- 따라서 3명의 자문변호사 모두 동 조례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비록 서울문화재단이 비록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율성이 요구되는 민간재단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고 그 기본재산도 대부분 서울시가 출연한 출연금이라는 측면에서 의회가 그 기본재산의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4조제3항 내용 중 “서울특별시의회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16
----------	---------

제안연월일 : 2013년 7월 5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4조제3항 내용 중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도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가능함.

2. 주요골자

안 제4조제3항 내용 중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기본재산) ① (생략)</p> <p>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u>자치구의 출연금</u></p> <p>2.~4. (생략)</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4조(기본재산) ① (현행과 같음)</p> <p>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u>자치구</u>의 출연금 및 재산</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u>서울특별시의회</u>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기본재산) ① (현행과 같음)</p> <p><u>1. (개정안과 같음)</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p>.....<u>서울특별</u> <u>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u> <u>고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본재산) ① (생략)</p> <p>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u>및 자치구의 출연금</u></p> <p>2.~4. (생략)</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4조(기본재산) ① (현행과 같음)</p> <p>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u></p> <p>2.~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